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자국민 보호 및 불법체류자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7 년 7 월 30 일

청 원 인

성 명 : 한원규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한원규
건명	자국민 보호 및 불법체류자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7년 7월 30일
<p>소개의견</p> <p>청원인 한원규 외 25명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5회 정기회의 외교통상위원회 청소년의원입니다. 제15회 정기회의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자국민 보호 및 불법체류자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화의 흐름에 발 맞춰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국내 수요가 부족한 3D 업종의 인력을 채워줄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6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 중 38만 명이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잠정적인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본 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제87조를 신설할 것을 요구합니다.</p> <p>출입국관리법 제87조(불법체류자 자진 신고에 한한 한시적 체류 자격 부여)</p> <p>① 고용주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입국 허가서가 확인 가능한 자 중 불법체류 기간이 5년 이하인 자에 한하여 시행한다.</p> <p>② 출입국관리법 제87조 1항에서 명시한 대상자 중 자진 신고자에 한하여 사증 발급 가능 여부 심사를 실시한다.</p> <p>1. 사증 발급 가능 여부 심사는 자진 신고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p> <p>③ 사증 발급 가능 여부 심사 기간 동안 출입국관리법 제87조 1항에서 명시한 대상자는 최대 3개월간의 한시적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p> <p>④ 사증 발급 가능 여부 심사 탈락자는 본국 송환 준비 기간을 최대 1개월의 체류 기간을 부여한다. 기한 초과 시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다.</p> <p>⑤ 사증 발급 가능 여부 심사 합격자는 이후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증 재발급 심사에 참여한다.</p>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대한민국의 국위가 하향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인해 그들의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고, 그에 따라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각종 범죄들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가 시작되면서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는 것과 농산어촌 및 기타 3D 업종의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동원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대거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미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자국민 보호 및 불법체류자 관리방안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주요골자

출입국관리법 제87조(불법체류자 자진 신고에 한한 한시적 체류 자격 부여)

① 고용주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입국 허가서가 확인 가능한 자 중 불법체류 기간이 5년 이하인 자에 한하여 시행한다.

② 출입국관리법 제87조 1항에서 명시한 대상자 중 자진 신고자에 한하여 사증 발급 가능 여부 심사를 실시한다.

1. 사증 발급 가능 여부 심사는 자진 신고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2. 사증 발급 가능 여부 심사는 법무부 소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실시한다.

③ 사증 발급 가능 여부 심사 기간 동안 출입국관리법 제87조 1항에서 명시한 대상자는 최대 3개월간의 한시적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④ 사증 발급 가능 여부 심사 탈락자는 본국 송환 준비 기간을 최대 1개월의 체류 기간을 부여한다. 기한 초과 시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⑤ 사증 발급 가능 여부 심사 합격자는 이후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증 재발급 심사에 참여한다.

현행	신설
<h1>신설</h1>	<p>제87조(불법체류자 자진 신고에 한한 한시적 체류 자격 부여)</p> <p>① 고용주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입국 허가서가 확인 가능한 자 중 불법체류 기간이 5년 이하인 자에 한하여 시행한다.</p> <p>② 출입국관리법 제87조 1항에서 명시한 대상자 중 자진 신고자에 한하여 사증 발급 가능 여부 심사를 실시한다.</p> <p>1. 사증 발급 가능 여부 심사는 자진 신고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p> <p>2. 사증 발급 가능 여부 심사는 법무부 소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실시한다.</p> <p>③ 사증 발급 가능 여부 심사 기간 동안 출입국관리법 제87조 1항에서 명시한 대상자는 최대 3개월간의 한시적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p> <p>④ 사증 발급 가능 여부 심사 탈락자는 본국 송환 준비 기간을 최대 1개월의 체류 기간을 부여한다. 기한 초과 시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다.</p> <p>⑤ 사증 발급 가능 여부 심사 합격자는 이후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증 재발급 심사에 참여한다.</p>

3. 기대효과

이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범죄 불안을 해소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및 처우와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및 수요가 부족한 3D 업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청원인 성명 : 한원규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